



제1호 발로뛰는 중소기업 호민관

국회의원 **정태근**

「취약계층을 살린다」  
국정감사 자료집 제8호

#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2010. 10.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정태근

- 면 지 -

## <목 차>

### I . 머리말

### II . 에너지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 III . 에너지복지 정책의 해외 사례

### IV . 정책적 제언

- 전면적인 에너지실태조사
- 에너지복지법의 제정
-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실시

### V . 참고자료

- 질의자료
- 보도자료
- 에너지복지 세미나
- 에너지복지법 초안

##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2005년7월 ‘여중생 촛불 사망사고’였음. 당시 노무현 정부는 사회양극화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이 가중되는 가운데 에너지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에너지복지 정책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바 있음.

에너지법(구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을 보면 “국가, 지자체,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이 조항에 의거 2006년 5월 제4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가칭)한국에너지재단 설립이 보고되고, 2006년 12월 민간 에너지 회사들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이 최초로 출범.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다가 현재는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받아 시행 중에 있음.

에너지복지는 “모든 국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기초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정의되고 있고 에너지빈곤층은 “난방, 취사, 조명 등 에너지구입에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정의 조차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님. 현재 한국에너지재단을 비롯한 에너지복지사업 수행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소비 실태 조사,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님.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광열비 부담 현황 자료를 인용한 2006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에너지복지 관련 국내 최초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빈곤층을 정확하게 대상화하고 이들에게 집행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법적 근거를 갖고 에너지복지정책이란 이름으로 통합적으로 수행되지는 않고 있음. 선언적인 규정인 에너지법 제4조 5항 이외에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하위 법 제정 (가칭 에너지복지법)에 대한 후속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 에너지복지정책이란 이름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한국에너지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 작업은 전무한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적 근거를 갖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하는 최저생계비에 포함시켜 광열비 명목으로 전기·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음.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에너지 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가스안전공사에서 정부 기금 및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현재 에너지빈곤층은 난방 등에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기를 많이 써 전기료를 많이 부담하고 비싼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등 가계 경상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구는 전체 소득의 38.2%(2008년), 50만원~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전체 소득의 10.4%(2008년)를 광열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현재 공급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하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방식이 대부분 가격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을 반영해 결과적으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효과를 낳고 있음. 즉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가격보조만 받게 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음.

특히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추진하는 보일러·창호 설치 등 저소득층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효과성 측정, 얼마나 에너지를 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작업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사업은 전력 절감에는 성과가 있으나 전체 편익 비용 분석에서는 1.0이하로 나타나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평가를 내 놓고 있음.

더욱이 위 사업들은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대상 선정 및 지원 내역, 재원 마련, 지원 체계 수립에 필요한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소비 관련 실태 조사를 기초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또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초생활 비수급자의 포함 여부, 기존 사회복지정책과의 차별성 여부, 재원 규모 추정 작업,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본 자료집은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외의 에너지복지 사례, 그리고 바람직한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 Ⅱ. 에너지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 1. 에너지복지의 개념

- 사회복지
  - 산업화의 진행으로 전통적 사회제도로는 새로이 발생하는 많은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워 새로운 사회제도가 등장함. 사회복지제도도 그중의 하나임.
  - 현대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사회복지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나라와 연구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합의된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미국 사회복지사협회(NASW)의 정의
  - 1) 사회유지에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해주는 프로그램, 급여,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국가체계의 하나
  - 2) 공동체 또는 사회의 집합적 안녕의 상태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분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기된 15개 법률에 기초함.1)

○ 에너지복지 정의

- 앞서 살펴 본 사회복지의 정의 및 개별 복지서비스의 기본이념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복지를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달리 정의하면 모든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에너지 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에너지 빈곤

- 에너지 빈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음. 다만 영국의 경우 소득의 10% 이상을 필요한 에너지(소비되는 모든 연료 및 적정 기준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에 지불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 가구로 정의2)

-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빈곤층에 속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빈곤 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임.

- 정책적 측면에서 에너지 빈곤의 개념을 정의할 때, 소득의 경우에서처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판단됨

- 문제는 절대적 에너지 빈곤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점임.

1) 15개 법률은 다음과 같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2) 영국의 적정온도 기준은 겨울온도는 21℃, 주거용 방은 18℃을 의미함

## 2. 에너지복지의 필요성

### 가. 에너지 소비 및 지출 실태

#### ○ 가구당 에너지소비

- 2005년 에너지총조사의 가정부문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는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음.

<표 1>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단위 : %)

	평균	100만원 미만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이상
계 (천kcal)	11,895.4	8,963.9	10,805.5	12,162.8	13,402.9	14,247.2	15,323.4	16,80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1.7	5.6	3.4	0.9	0.2	-	-	-
석 유 류	17.7	34.6	22.0	17.5	11.5	8.0	8.5	4.8
가 스 류	48.5	30.4	45.6	51.2	55.0	54.7	48.9	45.0
전 력	24.8	25.1	25.2	24.6	24.5	24.6	24.5	24.3
열에너지	6.9	3.4	3.0	5.5	8.7	12.7	18.1	25.9
임산연료	0.4	0.9	0.8	0.3	0.1	-	-	-

주 : 열에너지에 온수(급탕) 사용량 포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2009

-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8,963.9천kcal이고 소득이 100~200만원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0,805.5천kcal로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비하여 20.5% 정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짐을 알 수 있음.
- 소득계층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의 특징
  - 첫째,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많아지나 소득의 차이에 비하여 에너지 소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음.

- 소득이 100~200만원인 구간에 속한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100만원 미만에 속한 가구에 비하여 20.5% 많지만 소득의 차이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소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대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0,805.5천kcal이며 월 평균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6,803.6천kcal로 소득수준은 6배 이상 높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55.5% 많은 데 불과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또한 소비됨을 나타내는 것이며, 에너지가 필수재임을 강력히 시사
- 두 번째 특징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구조의 차이를 들 수 있음.
- <표 1>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소득구간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성 비율이 한 가구가 평균적으로 표에 나타난 비율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임.
  - 표에 나타난 비율은 각 구간에 속한 가구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가구의 수로 나누어 구한 결과임. 예를 들어 1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경우 구성비는 가구당 평균적으로 연탄을 5.6%, 석유를 34.6% 소비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연탄소비 가구에 비하여 석유를 소비하는 가구의 수가 많아 발생한 결과라는 점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난방용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에 의존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는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sup>3)</sup> 소득수준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가정용 에너지는 크게 전력과 난방 및 취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난방과 취사용 에너지는 동일한 경우가 많고 또한 난방용 소비량에 비하여 취사용 소비량이 크게 적으므로 <표 1>의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는 전력을 제외할 경우 난방용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가구당 광열비 추이

- 통계청의 가구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광열비로 지출비용이 많아짐을 알 수 있음.
- 소득 수준이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광열비 지출액은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전체 가구의 평균 광열비 지출액은 9만1천원으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2> 소득 10분위별 광열비 지출 추이(단위: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1분위	58,811	59,606	62,942	64,980	66,497
2분위	68,507	69,075	73,986	75,552	76,652
3분위	72,445	75,441	76,725	80,442	80,976
4분위	76,956	80,730	84,341	86,988	85,342
5분위	77,701	80,199	87,081	91,213	89,385
6분위	83,295	86,196	87,992	92,354	94,832
7분위	84,216	88,628	92,451	97,843	98,116
8분위	88,578	89,799	96,170	98,302	100,705
9분위	93,110	95,533	103,032	107,019	107,898
10분위	104,638	106,952	113,408	114,441	116,036
평균	80,827	83,217	87,815	90,915	91,646

자료 : 통계청

- 소득(경상소득)에서 광열비가 차지하는 지출 비중을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광열비 지출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4)
- 2003년 이후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광열비 지출 비중은 3%대 초반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소득이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광열비 지출 비중은 2007년 14.0%로 2006년보다 낮아졌으나 다른 계층에 비하여 크게 높아 광열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소득이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광열비 지출 비중은 2007년 1.6%로 낮아 에너지 구입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4) 월평균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경상소득은 근로소득(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이자나 임대소득 등), 이전소득(공적 및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되고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퇴직금 등을 포함

&lt;표 3&gt; 경상소득 중 광열비 지출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1분위	15.7	14.9	15.1	14.5	14.0
2분위	6.9	6.6	7.0	6.8	6.6
3분위	5.1	5.1	5.1	5.1	4.9
4분위	4.4	4.4	4.4	4.4	4.1
5분위	3.8	3.7	3.8	3.8	3.6
6분위	3.5	3.4	3.3	3.3	3.2
7분위	3.0	3.0	3.0	3.0	2.9
8분위	2.7	2.6	2.6	2.6	2.5
9분위	2.3	2.2	2.3	2.3	2.5
10분위	1.8	1.7	1.7	1.7	1.6
평균	3.2	3.1	3.2	3.1	3.0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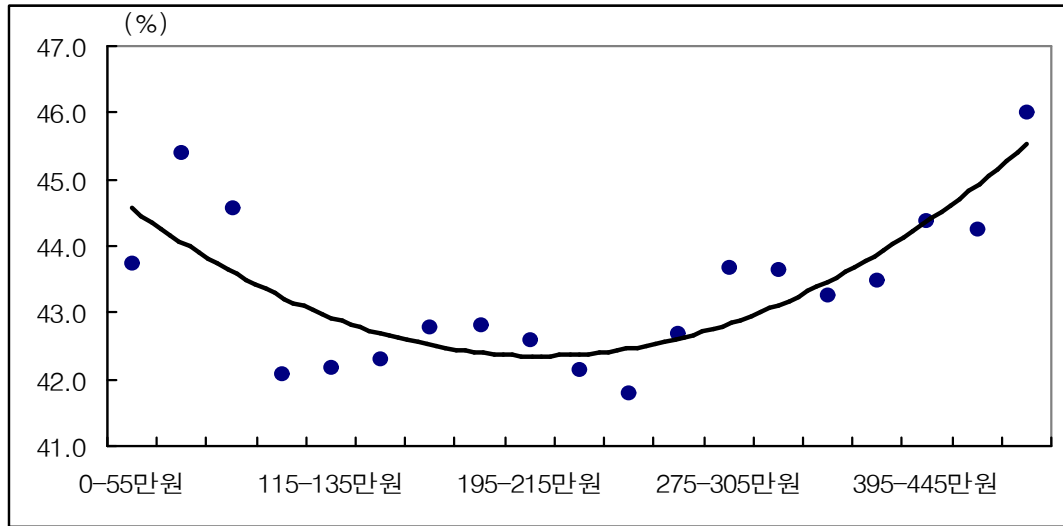
- 광열비 중 전력비가 점유하는 비중은 2006년 가구당 평균 45.1%로 2005년에 비하여 1.25%p 높아짐. 2007년은 47.9%로 소폭 상승함.
- 소득 10분위별 전력비 비중을 보면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와 높은 가구에서 전력비의 비중이 소득 수준이 중간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동절기 난방용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상위 계층은 여름철 냉방용 전력수요가 많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lt;표 4&gt; 광열비 중 전력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1분위	42.9	46.3	45.0	47.6	47.9
2분위	43.3	43.6	43.3	45.1	47.1
3분위	42.8	43.6	43.3	44.0	44.7
4분위	43.1	42.5	42.9	43.6	46.3
5분위	42.8	43.7	42.5	44.0	44.8
6분위	41.5	43.6	43.1	44.7	44.3
7분위	42.4	43.3	43.6	43.7	44.9
8분위	42.3	44.6	43.8	44.7	44.9
9분위	43.7	44.8	44.9	45.9	45.4
10분위	45.7	47.5	46.3	47.5	48.0
평균	43.1	44.4	43.9	45.1	45.8

자료 : 통계청

[그림 1] 소득계층별 전력비 비중



#### 나. 에너지복지의 필요성

-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예산도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되어야 함.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과거와는 달리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이후는 내수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소득분배 추이를 보면 2001년 이후 개선되다가 04년 이후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지니계수 : ('98) 0.316 → ('99) 0.320 → ('00) 0.317 → ('01) 0.319 → ('02) 0.312 → ('03) 0.306 → ('04) 0.310 → ('05) 0.310
- 최근에는 국제 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여 높은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 또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등유소비자가격(원/ℓ) : ('00) 545.0 → ('02) 553.5 → ('04) 757.5 → ('05) 873.7 → ('06) 936.2
-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은 미흡한 편임.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각 에너지원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법과 같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지속성, 형평성, 효율성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복지를 모든 국민이 복지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수준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 요구되는 시점임.
-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에 대하여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그림 2] 연체 및 체납가구 추이



### 3. 에너지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sup>5)</sup>

-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중 광열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지급
    -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생계급여 항목에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월간 최저 광열비(4인기준)는 다음의 표와 같음.<sup>6)</sup>
    - 실제 생계급여 지급에는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

<표 5>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목 마켓바스켓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사용량	비용	사용량	비용	사용량	비용	
전력(KWh)	187	18,482	187	18,482	163	15,294	
난방	LNG(원,m <sup>3</sup> )	55.4	31,145	37.9	21,468	-	-
	석유(원,ℓ)	6.2	4,552	10.3	7,562	42.1	30,910
	연탄(원,개)	-	-	-	-	8.4	2,587
	LPG(원,kg)	-	-	-	-	1.4	1,442
	계(원)	-	35,697	-	29,030	-	34,939
취사	LPG(원,kg)	2.6	2,679	6.0	6,181	10.0	10,302
광열비계	-	56,858	-	53,693	-	60,535	

-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항 가운데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중 그 밖의 지원에 연료비 포함됨.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은 자로서 추가적인 지원수요가 발생한 자

5) 에너지 지원 현황은 2006년 기준.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007년부터 지원 내용이 다소 변경됨

6) 2007년 생계급여 중 광열·수도비는 84,574원으로 2004년에 비하여 20,000원 정도 증가하였음.

- 지원방법 :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도 인정
  - 지원기준 및 기준 : 연료비 6만원. 원칙적으로 1개월. 3개월까지 지원 가능
- 연탄가격보조
    - 연탄의 최고가격을 고시가격으로 지정하여 생산원가와의 차액을 지원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석탄산업법 제29조
      - 에특회계법 제5조 : 투자계정의 세출예산중 에너지및자원관리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 석탄산업법 제29조 : 석탄·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 전력
    - 전기요금 지원
      - 누진요금체제 : 저소비 가구에 낮은 요금 부과
      - 주택용 복지할인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20% 할인
    - 단전유예
      -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가구 대상으로 겨울철과 여름철에 단전조치를 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
      - 단전기간 중에도 단전가구의 촛불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초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단전주택에 전류제한기를 부설
    - 지원근거 : 전기공급약관 또는 한전 업무처리규정
- 지역난방
    - 열요금 지원 : 임대주택(85㎡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열공급에 대한 기본요금 면제
    - 지원근거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32조의2(요금의 감면) 6호 및 8호
      - ※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외에 GS파워(주)와 안산도시개발(주)도 자발적으로 열요금 감면 시행 중
- 저소득층 난방시설 보급사업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보일러 교체, 단열시공 등 지원

- 재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07년 100억원, 신규사업)
- 사업근거 : 에너지기본법 4조제5항 및 제1차 국가에너지위원회 보고('06.11)
- 추진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기타 : Speed Call,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등

<표 6>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2006년)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광열비	수급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직접지원	연료비	위기발생가구
전력	단전유예	혹서기/혹한기	단전대상가구
	전류제한기 설치	220W	단전가구
	전기요금할인	20% 할인	수급가구, 1-3급 장애인 등
가스	공급중단 유예	동절기(10월~5월)	수급가구
	가스요금할인	산업용요금 적용	사회복지시설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기본요금감면	수급가구
연탄	가격보조	가격보조	제한없음
조명기기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수급가구, 사회복지시설
가스안전기	LP가스 퓨즈 콕	무상설치	미설치가구

## 나. 현행 에너지 지원의 문제점

### <지원방식의 구분>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의 구분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방법은 크게 제도적인 지원과 비제도적 지원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제도적 지원은 법적 근거 하에 지원되는 방법으로 현행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지원되는 것을 의미함.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생계급여 중 광열비 항목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직접지원 중 그 밖의 지원에 연료비를 들 수 있음.

- 비제도적 지원은 사회보장체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방법으로 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나 지역난방의 열요금 감면 등 에너지 공급자에 의한 사업을 들 수 있음.

<제도적 지원의 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광열비
  - 난방 형태 차이 반영되지 않음 : 각 가구의 난방 형태가 다르나 최저생계비 계층상의 광열비 결정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음.
  - 전체 난방용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이용하여 4인 가구의 기준사용량을 설정
    - 각 가구의 난방 형태별로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의 난방 형태를 파악해야 하는 등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등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하여 난방용 에너지원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 난방 형태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난방용으로 석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유가 급등으로 생계급여 중 광열비의 수준이 크게 낮음.

<표 7> 에너지원별 연간 난방비 비교

	사용량		A/B	가격(원)	연간비용(원)	
	최저생계비(A)	센서스(B)			A기준	B기준
연탄(장)	361.2	492.4	0.73	308.0	111,250	151,659
석유(ℓ)	672.5	965.6	0.70	936.2	629,595	903,995
LNG(m³)	557.2	742.7	0.75	559.7	311,865	415,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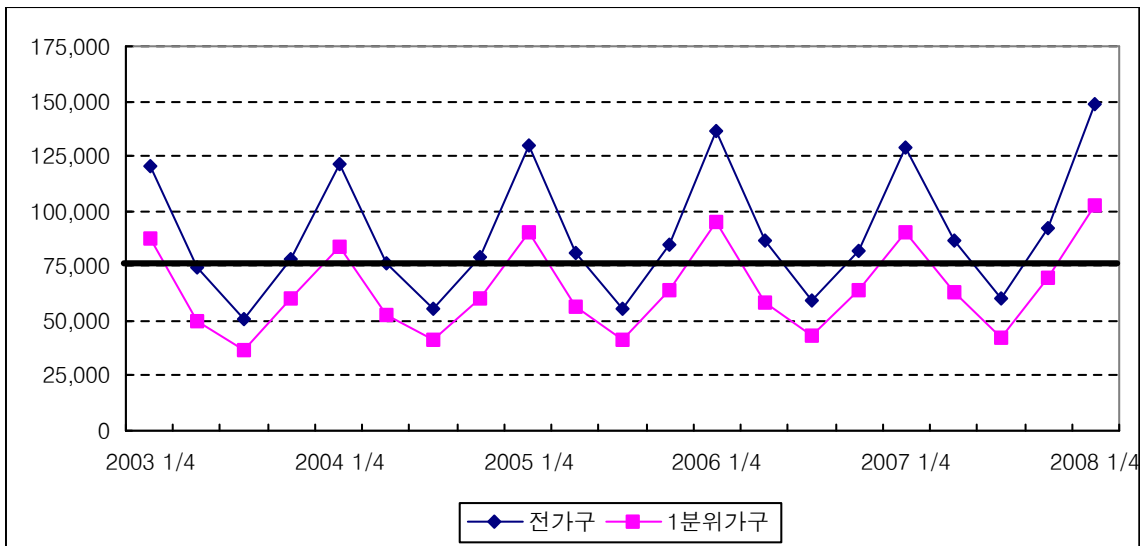
주: 센서스의 통계는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가구 당 평균 사용량을 나타냄, 석유(등유)와 LNG(도시가스 가정용) 가격은 2006년 연평균 가격이며 연탄가격은 최저생계비계층에 사용한 가격임.

- 이외에 지적될 수 있는 점은 광열비를 포함하고 있는 생계급여가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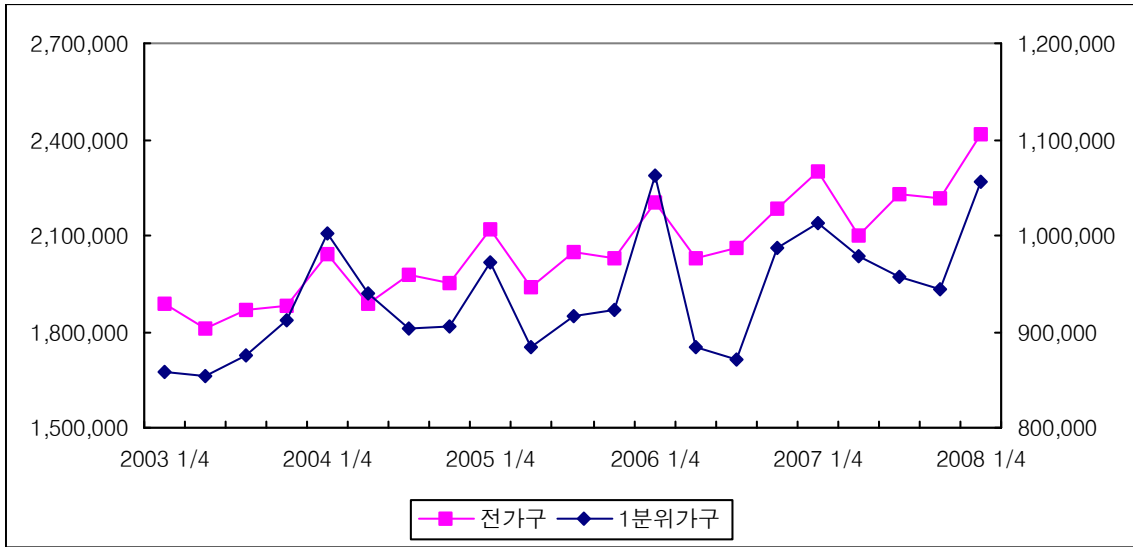
- 현행 생계급여 지급방식은 수급가구가 처한 형편에 따라 신축적으로 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에 국한해서 보면, 급여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수급가구의 특성에 따라 실제 에너지 구입에 지출한 비용과 추정된 광열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함. 대표적인 예로 수급가구 가운데 전기요금 연체로 단전 가구가 발생한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이는 생계급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 매월 일정액 지급으로 광열비 지출이 많은 동절기 부족 현상 발생

[그림 3] 분기별 광열비 지출 추이(단위 : 원)



[그림 4] 분기별 소비지출 추이(단위 : 원)



-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연료비 지원
  - 에너지공급 보편성을 확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지원대상이 너무 제한적임.

<비제도적 지원의 문제 : 가격지원방식에 따른 문제>

- 자원배분의 왜곡 문제
  - 가격지원 방식은 가격 왜곡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결국 경제에 추가적 비용을 초래함.
  - 예를 들어 연탄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신규대체수요가 창출되고 과다소비의 문제 유발. 실제로 최근 유가 상승과 고유가 지속 등으로 연탄과 석유사이의 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연탄수요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8> 등유/연탄 가격비와 연탄소비량

연도	'95	'97	'99	'01	'03	'04	'05
등유/연탄 가격비	1.12	1.82	2.53	3.12	3.05	3.81	-
연탄 소비량(천톤)	3,005	1,389	1,117	1,230	1,191	1,385	2,007

자료: 석탄협회(열효율기준), 에너지통계월보

- 형평성의 문제 유발 : 특정 에너지원의 요금 할인 등 가격지원의 경우 해당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구에는 혜택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구의 경우 전혀 혜택이 없음.
- 예 : 지역난방의 기본요금 면제
- 수급가구의 난방형태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최근 실태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석유보일러 사용가구가 42.0%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스보일러의 순서임.

<표 9> 소득계층별 난방형태(단위 : %)

	수급자	차상위		복지수요잠재층		차차상위	일반	전체
		I	II	I	II			
가스보일러	23.3	24.1	40.9	26.4	39.9	44.4	58.4	49.9
석유보일러	42.0	54.0	41.9	53.3	44.3	39.9	23.2	31.4
연탄보일러	3.8	4.2	1.4	3.9	1.8	1.3	0.9	1.5
중앙/지역난방	18.2	5.6	7.7	5.3	7.2	8.3	13.3	11.5
연탄/재래식	5.7	6.7	1.9	5.8	1.8	1.0	1.1	1.9
전기장판	4.4	3.4	1.9	3.0	1.4	1.5	0.3	1.0
기타	1.3	0.0	0.5	0.2	0.4	0.3	0.6	0.5
심야전기	1.3	2.0	3.8	2.1	3.2	3.3	2.2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5-45, 2005

### <지원제도 및 체계의 문제>

- 법적 지원근거의 미흡
  - 에너지기본법에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언급하고 있으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 이행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에너지법 제4조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에너지 공급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공급약관이나 공급규정을 근거로 지원
  - 그러나 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에너지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에너지복지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체계적 지원의 부재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본 방법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형평성의 문제 : 생계급여 중 광열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에너지 지원간 상대가격 차이가 커 형평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원제도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로 구분됨.
    - 효율성의 문제 : 자원배분의 왜곡뿐만 아니라 개별적 지원에 따른 지원방법의 효율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대부분의 지원이 생계급여 수급자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미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음.

### Ⅲ. 해외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1. 미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b>W A 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명)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li> <li>· (사업 내용) 에너지 설비 개선 지원</li> <li>· (지원 구조) 해당 수급권자 신청 → 적격 여부 심사 → 업무 위탁된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의 설비개선</li> </ul>
<b>LIHEA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명)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 <li>· (사업 내용) 겨울 난방비 (또는 여름 냉방비) 지급</li> <li>· (지원 구조) 수급권자 신청 → 조사 → 해당 급여 지급(현금)</li> </ul>

#### 가.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AP): 에너지 설비 개선 지원

##### □ 개요

- 1976년에 제정된 에너지보전 및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 을 근거로 에너지부(DOE : Department of Energy) 주관 아래 실시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총 주거비용을 줄이고,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
  - 매년 1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가구당 에너지 절감비용은 413달러에 달함.7) 1976년 이후 현재까지 약 620만 가구가 수혜
- 소득이 빈곤선의 150% 이하이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가 있는 가구가 우선 사업대상가구이며, 전국적으로 3,800만 가구 이상이 대상자로 추산됨. 가구당 지원금 한도는 2,500달러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에는 3,000달러로 증액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가구의 에너지소비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에너지 진단은 필수

7) 1달러=1102.59원(2008년 평균)

- 단열 및 창호공사, 냉·난방시설 개보수, 전력소비 부하 절감, 안전 및 환경 검사(가스 및 가전기기 안전점검, 실내 대기질 점검 등) 등의 사업이 포함
- o 1달러 투자 시 가구당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1.65달러이며, 지역사회의 간접편익은 2.72달러인 것으로 평가됨(DOE, 2008)

## □ 예산 및 조직

- o (예산)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은 에너지부의 기금과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저소득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기금, 기타 기금(에너지회사의 기금 등)으로 구성
  - 2007년 총 예산은 7억 달러로, LIHEAP 기금과 DOE 기금, 기타가 각각 39.7%와 29.4%, 30.9%를 차지(NASCSP, 2008)
- o (조직 및 역할) 에너지부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50개 주 및 자치구역)에 배분, 각 주에서는 이를 900여 개에 달하는 지역사업체(local agencies)에 배분
  - 에너지부의 역할
    - 프로젝트관리센터(PMC, 골든필드 사무국과 국립 에너지기술연구소)를 통해 각 주에 프로그램 예산을 배분(1978년 이후 총 50억 달러 이상 제공)
    - 프로그램 대상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에너지효율 개선 수단 개발 및 보급, 에너지절약 관련자료 구축, 지역사업체에 기술훈련 제공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각 주에 맞는 사업규칙 및 대상자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사업체와 계약하며, 지역사업체의 활동내용을 모니터링
  - 지역사업체(지역사회 활동그룹 또는 비영리단체)의 역할
    - 저소득가구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가구별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 내용을 결정하여 에너지진단, 사업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주택단열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

## □ 사업 추진절차

- 사회복지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 확인·조사 → 주 정부가 업무 위탁한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의 설비 개선이 이뤄짐

## □ 지원실적

- 개별 가구 평균 지원 금액은 약 1,961달러(2007년 기준, 우리나라 금액 환산 시 약 226만 원)

## [WAP 실적 추이(미 연방 전체)]

연도	총 투입 예산	수혜 가구 (수)	평균 수급액
2002	\$ 2억 3,000만	10만 4,683	\$ 2,197
2003	\$ 2억 2,350만	10만 202	\$ 2,230
2004	\$ 2억 2,270만	9만 9,756	\$ 2,232
2005	\$ 2억 2,820만	9만 7,582	\$ 2,338
2006	\$ 2억 4,260만	10만 4,149	\$ 2,329
2007	\$ 2억 460만	10만 4,283	\$ 1,961

## 나.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 에너지 비용 지원

## □ 개요

- 1981년에 제정된 옴니버스 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을 근거로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주관 아래 실시
- 저소득가구, 특히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최하위소득가구의 즉각적인 에너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
  - 지역사회서비스국(Community Services Administration)의 주관 하에 1975년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이래, 분산되어 있던 관련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1980년에 저소득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 Low Inc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시작. 1981년에

이를 보완하여 제정한 것이 LIHEAP 프로그램

- 위기개입 프로그램(Special Crisis Intervention Program, 1977) :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가구를 대신해 연료 공급자에게 난방 연료비를 지급
  - 에너지위기 지원프로그램(Energy Crisis Assistance Program, 1980) : 저소득가구에 에너지수당(Low Income Supplemental Energy Allowances)을 지원하고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등 위기상황에 개입
  - 저소득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EAP, 1980) : 1980년에 제정된 원유 초과이윤세법(Crude Oil Windfall Profits Tax Act) 을 근거로 난방비용에 초점을 둔 에너지비용 지급 프로그램
- 2007년 예산은 21억 달러로, 58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음. 이 예산은 2005년에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에 의해 51억 달러로 증액될 예정
- 주정부는 소득이 연방빈곤선(poverty level)의 150% 이하(최소 110%)인 가구나 주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가구로 선정할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취약가구)가 우선 대상
- 수혜가구의 70%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이하인 가구였으며,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가 각각 41%와 43%를 차지

## □ 예산 및 조직

- 보건복지부가 각 주에 매년 할당하는 예산은 공식에 따라 배분되는 정규/포괄(Regular/ Block) 기금과 긴급지원(Emergency contingency) 기금, 가구에너지지원 챌린지(REACH) 기금, 레버리지(leveraging) 기금 등으로 구분
- 2004년의 경우 총 기금의 55.4%는 난방지원, 16.5%는 긴급지원, 11.3%는 단열지원사업에 사용. 또한 8.7%는 행정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2.9%는 냉방지원에 사용

- 긴급지원 상황에는 자연재난과 에너지공급 손실 또는 파괴, 급격한 에너지비용 상승, 단전, 실업 등이 포함되며, 긴급지원기금은 대통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하나 이상의 주에 분배
- o 저소득가구의 냉·난방비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고려해 계산
  - 가구 총에너지소비: 모든 가구에서 냉·난방, 온수, 조명, 취사, 가전기기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총량을 Btu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으로,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주별 에너지소비 자료를 사용
  - 온도(Temperature Variation): 각 주의 에너지소비를 기온에 따라 조정해주는 것으로 30년 평균 냉·난방도일에 대한 각 주의 최근 냉·난방도일의 비율을 고려. 기본 데이터는 국립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자료를 사용
  - 냉·난방 에너지소비: 가구총에너지소비 중 냉·난방 에너지소비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에너지정보국의 추정방법론(end use estimation methodology)을 사용
  - 저소득가구 냉·난방 에너지소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 에너지소비를 저소득가구의 소비로 바꿔주는 과정이며,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원별 소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사용
  - 총 냉·난방비 지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원별 소비량에 각 주의 에너지원별 평균가격을 곱해 계산하며, 에너지정보국의 자료를 사용

#### □ 사업 추진절차

- o 기존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 확인·조사 → 에너지 비용 급여 지급의 과정을 거침

#### □ 지원실적

- o 가구별 평균 지원 금액은 월별 약 310달러(2007년 기준이며,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 시 월별 약 36만 원)

## [LIHEAP 실적 추이(미 연방 전체)]

연도	총 투입 예산	수혜 가구 (수)	평균 수급액
2002	\$ 18억 8,000만	423만	\$ 345
2003	\$ 19억 8,830만	461만	\$ 349
2004	\$ 18억 8,879만	482만 8천	\$ 317
2005	\$ 21억 8,600만	508만 3천	\$ 348
2006	\$ 31억 6,200만	571만 7천	\$ 448
2007	\$ 21억 8,600만	571만 7천	\$ 310

## 2. 영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세부 사업명	내용 및 지원 구조
Social 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inter Fuel Payment</li> <li>· Cold Weather Pay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내용) 겨울 난방비 지급</li> <li>· (사업 대상) WFP→60세 이상자 가구, CWP→부양자녀(5세 미만)가 있는 가구나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 가구</li> <li>· (지원 구조) 수급권자 신청→조사→해당 급여 지급(현금)</li> </ul>
	Fuel Dir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내용) 연체 난방비 대납 후 향후 지급될 실업급여에서 일정 비율씩 금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대납 후 실업급여에서 해당 연체 난방비를 국가에 상환하는 방식</li> <li>* 상환 공제 비율: 매주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5%</li> </ul> </li> <li>· (사업 대상) 실업수당 수령자 중 난방비 연체자</li> <li>· (지원 구조) 난방비 연체자 신청→조사→연체 난방비 대납→향후 급여에서 일정 비율씩 공제</li> </ul>
	Warm Front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내용) 에너지 설비 개선 지원</li> <li>· (사업 대상) 에너지 취약계층 기준 충족 가구</li> <li>· (지원 구조) 해당 수급권자 신청 → 적격 여부 심사 → EAGA를 통한 설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AGA: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상 에너지 설비 개선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에너지 설비 개선 전문 기업</li> </ul> </li> </ul>
	시장 가격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해 에너지 전체 가격 하향화 유도</li> <li>· 에너지 시장 내 경쟁 유도로 에너지 시장 가격을 낮추는 정책</li> </ul>

### 가. Social Action: 에너지 비용 지원

#### □ 동계 연료비지원(Winter Fuel Payment)

- 2007~2008년 사이 겨울 동안 60세 이상 노인 중 1,200만 명이 연료비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200파운드(80세 이상은 300파운드)
- 2008~2009년에는 지원비용을 가구당 50~100파운드씩 더 높임. 이로 인해 100만 가구가 에너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 혹한기 연료비지원(Cold Weather Payment)

- 극도로 추운 날씨에 가난한 연금생활자나 취약가구에겐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0만 명이 혜택을 받음. 가구당 지

- 원금은 주당 8.5파운드였는데, 2009년부터는 25파운드로 높일 예정
- 11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 동안 7일 연속으로 평균기온이 영하일 때(또는 전망될 때), 소득지원이나 연금크레딧을 받는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우선 지급
- 기타 취약계층 소득지원
- 연금급여(Pension Credit): 60세 이상 노인들의 최저 소득기준 제시(주당 124파운드)
  - 장애인지급(Disability Benefit): 장애인들의 취업보장을 위해, 2008~2009년의 경우 160억 파운드를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48%가 취업
  - 주거 및 세금 지급(Housing Benefit and Council Tax Benefit): 저소득가구 및 취약가구는 주거비용 및 세금 보조를 신청 가능

#### 나.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arm Front): 에너지 설비 개선 지원

##### □ 개요

- 2000년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잉글랜드에서만 170만 저소득가구가 난방 및 단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음
- 가정에너지효율계획(HEES)에 의해 1990년에 설립된 에너지효율 개선 전문회사인 Eaga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구당 지원액은 최대 2,700파운드(석유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4,000 파운드)<sup>8)</sup>
  -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지원이나 연금급여, 장애인 주거지원금 등을 수령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특히 취약가구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고려
  - 주요 사업으로는 난방기기 교체와 이중벽 단열공사, 다락방 단열공사 등이 있으며, 2007~2008년의 경우 각각 10만, 3만, 5.8만 가구에 사업이 진행
- 잉글랜드에서는 2007~2008년 기간 동안 3.5억 파운드(27만 가구)를 지원했으며, 지원을 받은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187파운드.

8) 1파운드=2013.85원(2008년 평균)

2011년까지는 9.7억 파운드를 더 지원할 계획

- 각 가정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단열공사는 평균 34일이 소요되며, 난방기기 설치는 75일이 소요
- 사업 후 고객만족도는 94%였으며, 건물에너지효율등급(SAP)은 평균 42에서 57로 상승.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가구당 1.2톤으로 추정
- 최근에는 가스난방이 불가능한 지역의 125가구를 대상으로 태양열기울을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 3. 기타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가. 아일랜드

##### □ 개요

- 아일랜드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및 에너지가격 정책과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으로 구분

##### □ 소득지원 및 에너지가격 정책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종 에너지비용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족부(Department of Social and Family Affairs)가 주관
  - 국가에너지계획(National Fuel Scheme)에 의해 지원되는 연료수당(Fuel Allowance)과 전기/가스지원 등 가구지원 패키지(household benefits package)가 있으며, 각각의 지원내용은 <표> 아일랜드 에너지가격 지원정책 참고
  - 연료수당은 사회복지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노인, 장기실직자 등) 및 에너지빈곤 가구가 대상자이며, 9월에서 4월까지 최대 32주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함
  - 가구지원 패키지는 66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66~70세인 경우, 취약가구이거나 소득이 적어야 함)

[아일랜드 에너지가격 지원정책]

항 목	지원내용	2007년 실적
연료수당	주 20유로(현금 지급)	총 40만 가구 1.7억 유로 지원
무연 연료수당	주 3.9유로(현금 지급) - 역청(bitumen)이 포함된 연료의 사용이 금지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지원	
전기수당	최대 연 2,400kWh까지 사용요금 지원	총 35만 가구 1.6억 유로 지원
가스수당	겨울(12월~5월) : 2개월당 114유로 공제 여름(6월~11월) : 2개월당 53유로 공제	
가스통 수당	전력망 또는 가스배관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월 41.7유로지원	

자료 : DSFA, <http://www.welfare.ie/>

## □ 에너지효율개선 정책

### o Warmer Home 계획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과 안락함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고용 모델(social employment delivery model)에 기초해 2002년에 시작. 즉,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들에게 에너지효율 개선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도록 함
- 커뮤니케이션 에너지자원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Energy and Natural Resources)와 SEI(Sustainable Energy Ireland)에 의해 공동 설립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다락방 단열, 방수(지붕 및 창호 수리), 온수장치 단열(hot water cylinder jacket), 고효율 조명, 이중벽 단열, 에너지상담 등
- 대상가구 선정기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적으로 마련되지만, 사업의 초점은 연료수당을 받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중에서 민간소유 주택(자가소유 및 임대주택으로 전체 에너지빈곤가구의 2/3 차지)에 맞춰져 있음(공공소유 주택은 제외)
- 대상가구가 사업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무료 또는 100유로 미만이며,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의한 펀드에서 지원. 대상가구는 개별적으로 지역사회 사업체에 신청해야 함. 이러한 사업체는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19개가 운영
  - 2002년 이후 2008년 6월까지 총 1.5만 가구에 1,100만 유로 상당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가구당 지원액은 평균 1,300유로), 2009년에는 투자금을 1,500만 유로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중 500만 유로는 전력회사가 투자). 이를 통해 대상가구의 에너지비용이 절반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sup>9)</sup>

### o 노인을 위한 가구보조 계획(Housing Aid for Older People Scheme)

- 환경, 문화유산 지방자치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Heritage and Local Government) 주관 아래 2007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의 주거개선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최대 지원금은 가구당 1.05만 유로이며, 창호수리 및 교체, 구조개선, 중앙난방 공급, 상하수도시설 공급, 라돈 방지작업 등의 사업이 포함

9) 아일랜드 커뮤니케이션 에너지자원부, 2008년 11월 13일 보도자료(<http://www.dcenr.gov.ie/>)

## 나. 프랑스

### □ 개요

- 프랑스에서는 에너지빈곤을 아직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빈곤의 한 증상으로서 보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빈곤 대책은 큰 틀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음(EPEE, 2006)
- 에너지빈곤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EU 평가보고서(EPEE, 2006)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에너지빈곤을 “저소득과 에너지 비효율적인 주거환경 때문에 주택을 적절한 온도로 난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으로 파악
- 2005년 EU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조사대상자 응답기준), 프랑스의 에너지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6.2%(15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EPEE, 2006)
  - 1인 가구와 단일부모 가구, 세입자, 밀집지역 거주가구, 1975년 이전 건축가구, 소득 3분위 이하인 저소득가구 등에서 에너지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광열수도비를 연체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4%

### □ 법률을 통한 사회적 지원 제도화

- Besson Law(1990)
  - 모든 사람이 적절한 수준의 주거지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액션플랜(PDALPD)을 세우도록 의무화
- Law 92-722(1992)
  - 수도, 가스 및 전기에 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명문화
    -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 또는 가구는 지방정부로부터 수도와 에너지공급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고 또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
  - 요금 미지불 시 공급중단을 막을 수 있는 국가적 지침을 확립

## o Law 2000-108(2000)

- 취약가구의 에너지에 대한 권리 강화
  - 취약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방법을 다양화하고, 지방정부가 단열개선과 난방제어, 에너지효율적인 가전기기 구입 등에 있어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령(Decree, 2004)에 따라 저소득가구에 대한 사회적 요금(social tariff)을 확정
  - 연소득이 5,520유로 이하이거나 월평균소득이 460유로 이하인 가구는 매월 100kWh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음(신청주의)
  - 법령(Decree, 2005)에 따라 전기요금 미납 시에도 다른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최소 수준의 전기를 공급할 것을 의무화

## o Law 2000-1208(2000)

- Decent Home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집주인이 세를 놓을 때 건물이 세입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함(기준 설정)

## o Law 2004-1208(2004)

- 에너지연대기금에 대한 관리를 카운티에 이양함으로써, 에너지빈곤 및 기타 가정부문 에너지문제에 대한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주도적으로 이뤄지게 됨

## o 국가주택기준에 관한 법(2006)

- 저소득가구에 대한 동계 단전금지 조항 삽입
  - 에너지회사는 과거 1년 동안 주거연대기금(Dwelling Solidarity Funds)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 동절기(11~3월)에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없음

## o 에너지연대기금(Solidarity Energy Funds)

- 1985년 빈곤과 취약성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Poverty and Vulnerability)에 의거해 도입되어 에너지연대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에너지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취약가구에 대해 재정을 지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영가스전기회사(EDF-GDF), 국가실업기구(Assedic), 비영리단체 등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총 기금액은 4,600만 유로에 달함

## □ 에너지효율 개선 수단

### ○ 주택개선청(ANAH)

- 주택개선작업 시, 즉 장애인을 위한 안전성, 쾌적성, 건강, 접근성 등의 개선작업 및 에너지효율 개선작업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기준에 따라 다양
  - 자가소유 주택의 경우 1.3만 유로 한도 내에서 작업비용의 20%를 지원.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35%까지 지원
  -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에게 15%의 보조금이 지급.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40~70%까지 지원

### ○ 환경 및 에너지관리청(ADEME)

- 저소득가구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실시
  - 지역수준에서는 가정방문과 상담 및 정보제공, 에너지진단, 에너지효율 개선작업, 사회적 근로자 및 주택관련 단체 근로자 교육 등을 수행
  - 국가수준에서는 지역수준 활동에 기초가 되는 정보 및 훈련, 평가와 관련한 기술을 제공하며, 국가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프로젝트와 시범사업 등을 촉진

### ○ 도시재생청(ANRU)

- 주거조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재생에 필요한 투자를 목적으로 2004년에 신설
- 에너지효율이 낮은 사회주택을 철거하고, 에너지효율이 개선된 사회주택을 건설
  - 2006년까지 주택 25만호를 교체했으며, 2013년까지 추가로 40만호를 교체할 계획

## 다. 브라질

### □ 냉장고 교체사업

- 2002년에 제정된 에너지효율법(Energy Efficiency Law)에 의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약 15만 대의 구형 냉장고를 고효율 신형 냉장고로 교체
  - 브라질 정부는 2005년에 에너지효율법을 수정하면서, 에너지효율 사업 규모와 사업참여 기업수를 확대
    - 냉장고 교체사업의 경우, 연 100만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
- 브라질에서는 가정용 냉장고가 약 5,000만대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약 1,100만 대는 10년 이상 된 제품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를 사용
  - CFC는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상의 규제물질이면서, 동시에 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CO<sub>2</sub>)보다 수천, 수만 배 더 큰 온실가스
- 사업성과
  - 에너지관련 효과
    - 가구당 에너지비용 절감: 연평균 25달러
    -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냉장고의 전력소비량 절감: 280L 냉장고의 경우 약 55%(연평균 432kWh) 절감
  - 환경적 효과
    - 오존층 파괴물질이면서 온실가스인 CFC-12와 HFC-134a 등을 안전하게 제거
    - 2000년 이전에 생산된 냉장고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당 CO<sub>2</sub> 3톤의 온실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양의 CFC를 포함
  - 사회적 혜택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정부의 저소득가구 에너지비용 보조금 지출액이 절감(가구당 월평균 3.8달러)
    -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인한 불법 전력망 연결이 감소해 전체적인 전력망의 신뢰성과 소비자 안전성이 향상

## IV. 정책적 제언

에너지 복지 차원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나, 사업 시행의 역사가 일천하므로 ‘좋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더불어 잘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상계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는 ‘국가 등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하위법령이나 관계법률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법제화 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복지에 대한 법제화의 부재는 에너지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향후 ‘에너지 복지법’ 등의 법률 신설과 각종의 에너지 복지정책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에너지 복지를 위한 각종의 에너지 통계와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임.

최저 광열·수도비라는 것은 인체에 적합한 수분섭취, 적절한 보건·환경 유지, 적절한 체온유지와 취사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함.

위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의 실제 최저 사용량에 대한 계측된 기준이 필요함에도, 조사에서의 계측은 결국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한 평균 사용량의 일정비율만으로 최저 필요량을 추정함.

이러한 방법은 최저 에너지 필요량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여 에너지복지정책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음.

셋째, 정부가 광해방지공단을 통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연탄쿠폰제도는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임.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연탄쿠폰제도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해 겨울철 난방지원을 하면서 연탄쿠폰을 연탄사용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즉,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택의 난방방식이 다르다는 우연한 이유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자의적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지역적으로도 연탄난방이 도시지역보다는 지방에 집중됨으로서 지원대상이 지방에 편중됨. 예로 2008년 지원대상 가구현황을 보면 서울이 5,003가구인데 비해 강원도가 16,940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이 16,153가구로 뒤를 이음. 이는 가구수와 비교했을 때 혜택을 받는 비율의 큰 차이를 나타냄.

넷째, 에너지복지차원의 빈곤층에 대한 전력지원책은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먼저 누진요금제는 가구당 전력소비량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소비가 적을수록 요금이 저렴하고 많을수록 요금이 누진되는 구조로 일견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sup>10)</sup> 평균 5단계(401~500kWh) 사용가구수가 7,500 가구. 6단계(501kWh~) 사용가구수가 1,800가구<sup>11)</sup>(한전 2007년도 자료)로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전기사용량이 많음.

전기요금 누진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사용량 2단계 정도라고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기사용량 3단계(201kWh~301kWh)이상 사용자가 17만 7천


10) 전력거래소.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용 6단계 누진제 요금 판매 실적(2007년1월~2008년9월).

11) 한국전력.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누진제 요금 판매 실적

명으로 총36만 7천명의 48.2%를 차지한다는 것은 에너지 복지가 요구되는 가구가 다른 용도의 전력수용가(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에게 교차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모순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소비행태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가구당 기준이 아닌 가구원당 기준으로 변경을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함.

## V. 참고자료

	<h2 style="margin: 0;">질 의 자 료</h2>	
	<p><b>국회의원 정태근</b>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p>	<p>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b>지식경제부</b> 2008. 10. 6 (월)</p>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 □ 에너지 복지 - 다 함께 잘 사는 ‘좋은 정부’의 필수요건

현재 에너지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전력, 가스 등 6개 부분에서 시행되고 있음.<sup>12)</sup>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전력	단전유예	흑서기/흑한기	단전대상가구
	전류제한장치설치	220W (10,000대 운영)	단전대상가구
	전기요금 할인	2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20% 할인	1~3급 장애인·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20% 할인 (‘07.1.1 신설)	사회복지시설 (‘07년 61,102개소)	
가스	공급중단 유예	동절기	수급가구
	가스요금 할인	산업용요금 적용	사회복지시설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기본요금 전액감면	국민기초수급자 (19천세대)
연탄	연탄현물(쿠폰) 보조	현물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기기	고효율조명기기	무상보급	기초생활수급가구 사회복지시설
난방지원사업	난방시설지원 및 단열개선사업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이 중 정부예산 사업은 연탄쿠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고 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 등 3가지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12) 지식경제부. 2008년도 에너지자원통계 2-2 에너지기업의 지원제도. 에너지복지 관련 사항 정리.

장관, 그린성장과 그린복지는 함께 갈 수 있음. 이것이 진보와 보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대립 구도를 완화하면서 갈 수 있는 ‘좋은 정부’의 모습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참여정부 시절 2006년 2월 에너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민주당 당 대표인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2006년 5월 제4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가칭)한국에너지재단 설립을 보고했음.

2006년 12월 한국에너지재단이 민간 회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식 출범한 이후 산업자원부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100억원 사업비를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위탁시키고 있음. 동절기 곤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수혜 대상자임.

이 사업의 예산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억원이 책정되어 집행되었으며 2008년 올해는 본 예산으로 150억원,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35억원이 편성되어 계속사업으로 총 285억원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내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에너지 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285억원을 복권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해 2008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장관, 에너지재단은 에너지기본법 상 나와 있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관임. 이런 기본 정신을 반영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 지원금을 편성하고 있는 것임.

하지만 올해 에너지 위기를 맞아 자원개발 분야에 대폭 예산이 증액되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증액된다는 사유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상징적 사업으로 에너지 재단에 위탁하는 ‘저소득층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상임. 최소한 50억원은 편성해 복권기금 285억원과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린성장과 그린복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정부 차원의 정책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에너지복지 관련 지식경제부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sup>13)</sup>

(단위 : 백만원)

구분	07년도	08년도	09년도(안)
연탄쿠폰	-	7,629 - 본예산 3,029 - 추경 4,600	15,000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보일러 교체등	10,000	28,500 - 본예산 15,000 - 추경 13,500	28,500 (당초 에트에서 복권기금으로 소관 변경)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16,300	35,500 - 본예산 19,000 - 추경 16,500	35,000

에너지 복지 차원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나, 사업 시행의 역사가 일천하므로 ‘좋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더불어 잘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상계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는 ‘국가 등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하위법령이나 관계법률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법제화 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복지에 대한 법제화의 부재는 에너지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향후 ‘에너지 복지법’ 등의 법률 신설과 각종의 에너지 복지정책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에너지 복지를 위한 각종의 에너지 통계와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임.

13) 지식경제부. 2007년~2009년 에너지복지 사업 예산 집행 및 수립 현황.

최저 광열·수도비라는 것은 인체에 적합한 수분섭취, 적절한 보건·환경 유지, 적절한 체온유지와 취사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함.

위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의 실제 최저 사용량에 대한 계측된 기준이 필요함에도, 조사에서의 계측은 결국 기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한 평균 사용량의 일정비율만으로 최저 필요량을 추정함.

이러한 방법은 최저 에너지 필요량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여 에너지복지 정책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음.

셋째, 정부가 광해방지공단을 통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연탄쿠폰제도는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임.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연탄쿠폰제도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해 겨울철 난방지원을 하면서 연탄쿠폰을 연탄사용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즉,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택의 난방방식이 다르다는 우연한 이유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자의적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지역적으로도 연탄난방이 도시지역보다는 지방에 집중됨으로서 지원대상이 지방에 편중됨. 예로 2008년 지원대상 가구현황을 보면 서울이 5,003가구인데 비해 강원도가 16,940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이 16,153가구로 뒤를 이음. 이는 가구수와 비교했을 때 혜택을 받는 비율의 큰 차이를 나타냄.

넷째, 에너지복지차원의 빈곤층에 대한 전력지원책은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먼저 누진요금제는 가구당 전력소비량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소비가 적을수록 요금이 저렴하고 많을수록 요금이 누진되는 구조로 일견 에너지 복지

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sup>14)</sup> 평균 5단계(401~500kWh) 사용가구수가 7,500 가구. 6단계(501kWh~ ) 사용가구수가 1,800가구<sup>15)</sup>(한전 2007년도 자료)로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전기사용량이 많음.

전기요금 누진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사용량 2단계 정도라고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기사용량 3단계(201kWh~301kWh)이상 사용자가 17만 7천명으로 총36만 7천명의 48.2%를 차지한다는 것은 에너지 복지가 요구되는 가구가 다른 용도의 전력수용가(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에게 교차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모순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소비행태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가구당 기준이 아닌 가구원당 기준으로 변경을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함.

##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음

### 1. 에너지 복지법 제정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는 ‘국가등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서 규정한 빈곤층등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기여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장관은 답변 바랍니다.<sup>16)</sup>

현재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14) 전력거래소.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용 6단계 누진제 요금 판매 실적(2007년1월~2008년9월).

15) 한국전력.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누진제 요금 판매 실적

16) 최근 임혜규 의원이 교육복지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법제화가 가능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2. 연탄쿠폰 제도의 불평등성

연탄쿠폰제도는 일종의 바우처제도로써 현금지원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의 방법이라고 생각됨. 하지만 그 대상을 연탄난방가구로 한정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하여 겨울철 난방지원을 하면서 연탄사용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즉,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택의 난방방식이 다르다는 우연한 이유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탄쿠폰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로서 기초생활수급자중 등유난방가구, 가스난방가구, 전기난방가구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에 상당하는 (난방)쿠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없는가?

## 3.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요금 쿠폰제도의 신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는 6단계의 누진체계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에 대해 20%를 감해주는 복지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심야전기도 복지할인제도를 신청할 경우 20%를 감면해 주고 있음.<sup>17)</sup>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택용 6단계 누진제 요금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전기사용량 2단계까지라고 할 때, 전기사용량 3단계(201kWh~301kWh)이상 사용자가 17만 7천명으로 총36만 7천명의 48.2%를 차지하고 있음.<sup>18)</sup>

17) 한국전력. 9월분 전기요금영수증 뒷면. 전기요금할인제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사용실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현재의 주택용에 부과되는 6단계 누진 요금체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요금 구조임.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액(예로 기초생활수급자 평균 전기사용량의 50%)의 전기요금쿠폰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에너지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전기요금쿠폰제도에 대해 검토한 후 본 의원에게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

18) 전력거래소.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용 6단계 누진제 요금 판매 실적(2007년1월~2008년9월).

	<b>보 도 자 료</b>	
	국회의원 정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10. 08. 25 (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 784-1262 FAX. 788-3216

##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 세미나

-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및 지원방안 -

- 일 시 : 2010년 8월 25일 (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정태근·국회의원 조정식
- 주 관 : 지식경제부·한국에너지재단

국회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 지식경제위원회)과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지식경제위원회)은 지식경제부·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8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정태근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재단 김기춘 이사장을 비롯한 에너지 및 복지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 축사를 통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에너지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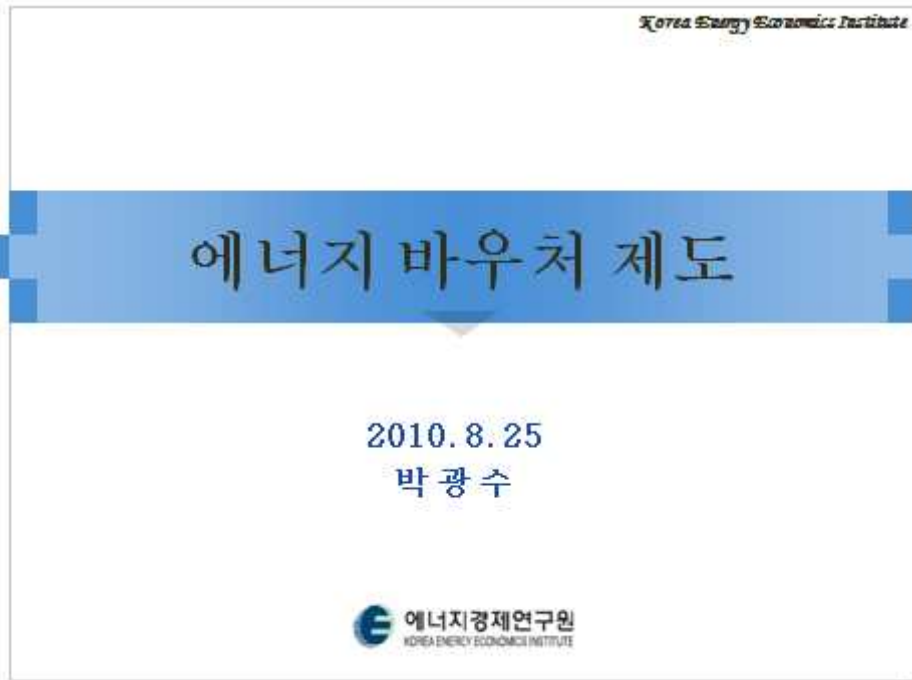
한편, 이날 기초발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효율적인 방안이 에너지바우처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전망팀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함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좌장), 서울대 구인회 교수,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김성진 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연구위원, 이현주 연구위원, 부경대 이재원 교수 등 학계와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태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복지는 개별 사업자별로 분산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도 복지기관에 전기장판을 보급하는 현물보조 형태이거나 전기요금, 가스요금인하 등을 통한 가격보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재단의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예산이 아닌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에너지복지 예산이 후순

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였다.

또한 공동으로 주최한 조정식 의원은 “에너지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전기와 가스 등은 음식물, 의료, 주거, 교육 등과 같이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의 중요 요소로서 국가는 이에 대한 공급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에 준하는 재정책임을 져야 한다”며 “에너지 복지를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자원 조달이 필요하고 그의 근거가 되는 에너지복지법의 제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목 차

- I 에너지 지원의 필요성
- II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 III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 IV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I. 에너지 지원의 필요성

-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생계급여(광열비 포함)외에 2007년 이후 다양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선 및 보완 필요
- 현행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 II.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 1. 소득지원: 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광열비 포함

<2008년 표준가구 월저소득비 항목별 구성(07년 기준조사 기준)>

비목	금액(원)	비율(%)
식료품비	476,869	37.6%
주거비	219,314	17.2%
광열수도	84,874	6.7%
가구집기	37,719	3.0%
의복신발	80,090	4.0%
보건의료	66,349	4.4%
교육	66,796	4.6%
교통모락	24,712	2.0%
교통통신	132,766	10.6%
기타소비	77,292	6.1%
비소비지출	52,689	4.2%
<b>계</b>	<b>1,266,646</b>	<b>100.0%</b>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 II.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 2. 요금할인

- **전기 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20% 할인
- **가스 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등에 도시가스 요금 12% 할인
- **지역 난방**
  - 기초생활수급자 열요금(기본요금) 감면
- **연 탄**
  - 가격보조(최고가격과 생산원가 차액)
  - ※ 연탄가격 단계적 현실화에 따라 연탄 쿠폰 지급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 II.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 3. 이용효율 개선사업

- **단열 및 난방기기 개보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보일러 설치, 난방매트 등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에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 기반을 제공하고,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유도
-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보급**
  -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보급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6

## II.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 4. 공급중단 유예

#### ● 전기

- 단전 유예 : 흑서기, 흑한기
- 전류제한기 부착 : 전기요금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220W 전류제한기 부착 지원

#### ● 가스

- 공급중단 유예 : 동절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7

## III.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 1. 생계급여 중 광열비

#### ● 표준가구 및 최저 광열비 산정 기준

-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의 에너지 소비량 추정치(4인가구 기준)
  - 전기 : 208KWh, 난방 및 취사 : 도시가스 67.4 m<sup>3</sup>
- 에너지 소비의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 주거 형태나 면적 등에 따른 소비량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비량보다 크게 부족.
  - ※ 최저생계비 계측 : 4인 가족 최소주거기준 11.2평 적용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8

### III.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 에너지 가격 차이에 따른 난방비용 차이 반영 문제

- 석유 난방 > 가스 난방 > 연탄 난방

<에너지원별 연간 난방비용 비교>

항목	심야전기 보일러	도시가스 보일러	석유 보일러
기기 및 설치비의 연간부담	732,000원	164,000원	90,000원
연료비(전기료)의 연간부담	516,000원	939,000원	1,320,000원
연간계	1,247,000원	1,143,000원	1,410,000원
심야전기 대비 비율	100%	92%	113%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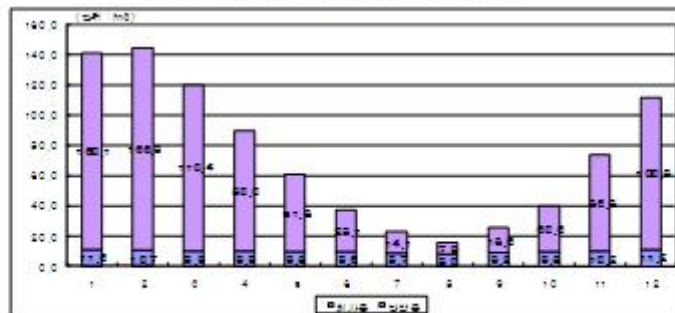
9

### III.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 ■월 일정액 지원에 따른 문제

- 생계급여의 경우 매월 일정액(월 평균액)을 지원, 그러나 에너지 소비는 동절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이 존재

<군북주요 4원 가구 월별 도시가스 소비(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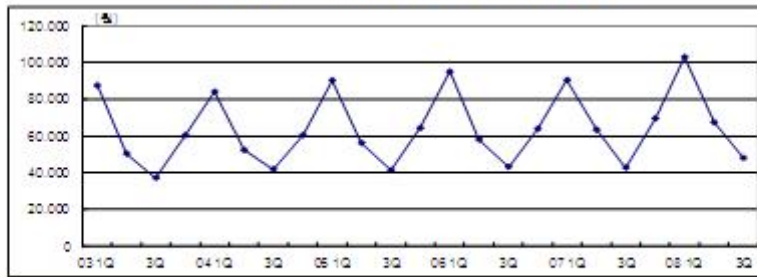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

10

### III.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 동절기 난방비 증가로 광열비 부족현상 발생
- 2007년 1/4분기 소득하위 10% 가구의 광열비 지출액이 90,475원이므로 생계급여의 광열비보다 23,525원 많음. 소득하위 10%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2.5명이므로 4명 기준시 차이는 더욱 확대

<소득 하위 10% 가구의 분기별 월평균 광열비 지출액 추이>



### III.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 ● 현금 지원으로 인한 전용 등 도덕적 해이 문제

-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현금)지원, 따라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 형태의 차이는 불가피
- 수급자 가운데 단전 대상가구의 증가 추세를 도덕적 해이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현금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임은 분명

#### ● 표준 가구와 지원대상 가구의 특성 차이

### III.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 2. 지원방식의 문제

● **가격 지원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 소비량이 많을수록 지원 증가
- 지원의 효과가 해당 에너지 소비자에 국한됨

#### 3. 지원대상의 문제

●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자에 집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

#### 4. 지원체계의 문제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사이의 유기적 협조 미흡**

### III.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 5. 향후 개선방안

● **가격지원을 축소하고 소득지원을 확대**

- 에너지 공급자의 가격지원 단계적 축소 및 이에 따른 경감액을 소득 지원으로 보전

● **생계급여 중 광열비 현실화**

- 주거형태 등을 고려한 광열비 책정 필요
  - 광열비 지출의 계절성을 고려한 생계급여 지급방법의 개선 필요
    - 난방비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에 차등지급
    - 광열비 수준이 부족하므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광열비 추가 지급
- ⇒ 현금 지급시 전용의 문제로 광열비 부족현상 발생 가능하므로 현물 또는 배우처 형태로 지원

### III.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 ● 개별 복지 시스템의 도입

- 장기적으로는 광열비를 의료급여 등과 같이 생계급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
- **문제** : 생계급여 수준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미흡.
  - 현재의 현금지원은 지원대상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속적으로 사용하여 부족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
- 지원 예산 급증 초래

#### ● 지원 대상의 확대

-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1. 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특징

##### ● 개념

-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 수혜자들의 해당 서비스 소비 증진을 위해 도입

##### ● 특징

- 바우처 제도는 현금지급제도와 현물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제도와 다르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 중에서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와 구별됨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1. 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특징

#### ● 개념

-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 수혜자들의 해당 서비스 소비 증진을 위해 도입

#### ● 특징

- 바우처 제도는 현금지급제도와 현물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제도와 다르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 중에서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와 구별됨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 바우처의 부작용

- 공급자간 경쟁의 왜곡으로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마케팅 경쟁만을 초래할 가능성
- 공급자 선정이 잘못 이루어지게 될 경우 경쟁원리에 역행하는 공급자 보호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
- 시장에 충분한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로 인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가격이 크게 상승
-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 및 바우처 전매, 수혜자 식별로 인한 낙인 효과,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거래 및 행정비용 상승 등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 바우처 도입의 전제 조건

-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 공급자간 유효한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
-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행사 보장
- 제도 운영 측면에서 충분한 자원 확보와 제도를 총괄·감독하는 전담기구의 마련, 상황에 맞는 중앙 및 일선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등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2. 바우처 제도 유형

#### ● 구매력 제공과 서비스 대가 지불방식에 의한 분류

- **명시적 바우처**: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구매권 부여
  - ※ 미국의 식품권(food stamp)제도 등
- **묵시적 바우처**: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후불
  - ※ 호주의 주거보조(accommodation supplement), 미국의 의료지원제도 (medicaid) 등
- **환급형 바우처**: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서비스를 구입하고 이후에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수혜대상 범위에 의한 분류
  - 선별적 바우처 (selective voucher)
  - 보편적 바우처 (universal voucher)
- 바우처 지급액 수준에 의한 분류
  - 균일 바우처 (uniform voucher)
  - 차등 바우처 (differential voucher)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3. 바우처 제도 국내외 사례

#### ● 국내 사례

적용대상	시행시기	주요부처	정책목적	바우처형태
교육훈련비	1999년 9월	노동부	훈련비 지원의 효율화 증진, 행정비 감소 증진	갑축액
민간보육시설보육료	1999년 9월	여성부, 교육부	복지증진, 효율성 제고	갑축액
민간·4대 보육료 지원	1991년, 2004년 확대	여성부	복지증진, 효율성 제고	갑축액
문화바우처	2009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복지증진, 문화산업 활성화	갑시액
어학교과비지원	200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복지증진, 어학산업 육성	갑축액
유치원보육료교육바우처	2009년 9월	보건부	효율성 제고, 특수교육지원 강화	갑시액
신규·신설 아파트단지 지원	2009년	보건복지부	복지증진,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갑시액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 해외 사례

바우처 종류	서비스 내용	중요목적
밥통 (외국고등학교를 지체 15세 이상 학생)	사립고등학교 비용의 40%를 정부가 지원	복지공헌
내달린트 (외국고교 대상 아동)	불사민 주류 없이 충분한 지원을 받음	시장연출
누르델트 (고교 졸업 아동 대상)	정부보조가 없는 사립학교 학비 대상	시장연출
스데덴 (외국고교 아동대상)	외국고교 아동대상	복지공헌
스토틀린 (유럽시아 Nursery voucher(1992년 시행))	일일시아 8세 이하 아동, 시외비가 17개월 107개 cheque book 발급	복지공헌
핀단트 (보육바우처)	1995-1997년 480개 시를 총 337개 지역 실시	시장연출
일트 (보육바우처)	저소득층 학비 대상	시장연출

자료 : 한국고, 바우처 연구, 2009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 해외 사례(계속)

바우처 종류	일역	서비스 내용	목적	지원 형태
Food Stamp Program (전국적)	식량안정	(주류나 알코올 제외) 식료품 구매 지원	복지공헌	일시적
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전국적)	식량안정	저소득층 임신/산후 여성 및 유아에 대한 주류 식료품 구매 지원	복지공헌	일시적
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전국적)	식량안정	WIC 자격이 있는 여성 아동 대상 과일/야채 구입 지원	복지공헌	일시적
이클로저드프로그램 (Migrant Health Program, 전국적)	보건	이주자나 저소득층자의 의료기관 이용바우처	복지공헌 홍수지원	정기적 지원
고용준비바우처(전국)	훈련교육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이나 기술 훈련 등의 지역 훈련과 고용프로그램	시장연출 복지공헌	일시적
엘리메이그 Ultra Low-Rush Toilet Voucher Program	훈련	홍수피해를 방지 위한 지원 바우처	홍수지원	일시적

자료 : 한국고, 바우처 연구, 2009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4. 에너지 바우처 제도

#### 가. 개념

- 수혜자가 에너지(전력, 난방, 취사) 구매권(쿠폰, 카드 등)을 수령하여 본인이 원하는 공급자에 제시함으로써 에너지를 공급 받고 공급자는 구매권을 정부에 제시하여 사후에 비용을 수령하는 제도

#### 나. 도입 필요성

- 생계급여의 문제점 보완 필요
  - 생계급여 중에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금지급, 매월 일정액 지급, 추정 에너지 소비량 부족의 문제 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현물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수요자에게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을 지급함으로써 현재 에너지지원의 문제점 개선 가능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 가격지원의 문제점 개선

- 가격할인 지원에 따른 에너지 소비 유도과 같은 비효율을 개선하고 많이 소비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형평성 문제 개선

〈수급가구 전력 사용량 구간별 분포(10.1~6월)〉

사용량구간(kWh)	가구수	비율(%)	소비량(kWh)	요금	할인액
0~100	46,603	9.7	100	6,500	1,300
101~200	156,448	32.7	200	17,210	3,442
201~300	180,581	37.7	300	33,120	6,624
301~400	69,411	14.6	400	48,480	9,696
401~500	19,178	4.1	500	72,760	14,552
501~1000	6,563	1.4	1,000	356,200	71,240
1000초과	49	0.0	1,200	646,320	129,264
누계	478,835	100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예산의 허용한도에서 점차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지급
- 수급자에 20만원 정도의 바우처 지급시 연간 1,708억원(2008년 일반수급자 기준) 자원 필요
  -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필요 재원은 축소
- 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일단 수급자 중 취약계층부터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수급자 전체로 확대
  - 단위당 난방비용: 석유>도시가스>연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설비 분포(2008)>

노인세대	소년·소년 가정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세대	기타	계
238,132	14,276	82,880	19,744	162,627	291,680	39,988	864,208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9.7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라. 에너지 바우처(안)

##### ● 에너지 쿠폰

- 쿠폰을 현금처럼 주유,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소비에 사용
-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어 발행에 별도의 제약은 없음
  - ※ 先拂로 보면 상품권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後拂로 보면 신용공여로 인정되어 신용관련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를 받음
- **장점** : 사용이 용이하고, 별도의 관리비용 불요
- **단점** : 전매·전용가능성이 있어 본인 확인 등의 절차 필요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 에너지 카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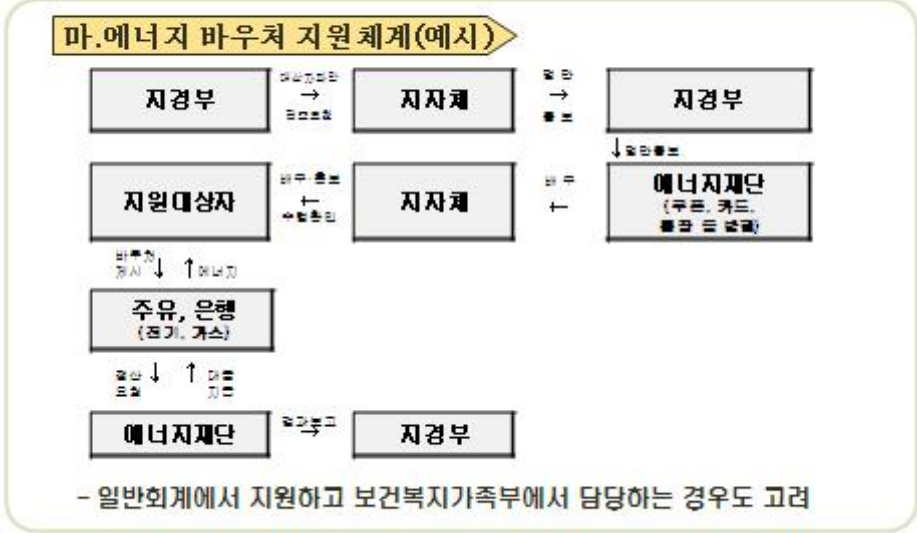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 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 소비시 사용
- **장점** : 여타 부문에의 전매·전용 가능성 차단
  - ※ 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행 결과
    - 지불 정산업무 전산화로 지자체 행정부담 경감
    - 지불소요기간 : 쿠폰(1~2개월) e-바우처(5일 이내)
    - 중앙 정보 집적체계로 사업실적 실시간 파악 및 행정비용 절감
    - 대상자별 소비 실태파악 용이, 중복지원 가능성 차단
- **단점** : 초기 관리체계 구축에 시간 소요 및 도입비용 상승
  - 수급가구 중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많음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 에너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

- 지원액을 월별로 통장을 통해 지급하고, 에너지 소비에 사용시 차감
- **장점** : 전매 가능성은 비교적 적고, 은행 결제시 유리
- **단점** : 쿠폰, 카드에 비해 사용상 불편

## IV. 개선방안: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e End*



## II 에너지복지 정책 세미나 토론 III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대한 토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구인회

### 1. 에너지 빈곤의 정의

□ ‘에너지 빈곤가구’란 필요한 수준의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최저수준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에너지 비용 지출로 생계에 과도한 부담을 받는 에너지비부담 과다 가구로 정의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처럼 소득의 10%이상을 필요한 에너지구입에 지불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정의할 수 있음. 또 단전 및 가스 공급중단 등으로 필수적 수준의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정의.

○ 따라서, 에너지 빈곤가구란,

- 1) 욕구기준으로 ①필수적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소득기준으로 판단), ② 소득의 10%를 초과하여 필요한 에너지구입에 지불하는 가구 (주로 동절기에 해당),
- 2) 소득기준으로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미달)을 대상으로 함. 초기에는 최저생계비 100% 미달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고 점차 대상가구 소득수준을 높임.
- 3) 기타고려사항 : 에너지가 필수적 욕구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동의수준이 높고 현 물급여로 제공할 경우 남용의 소지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우리나라에는 가구소득의 10%이상을 최소한의 에너지(광열비 기준)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빈곤층’이 전체 가구의 7.8%, 약 120만 가구로 추정

□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난방비 부담 많음.

-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로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34.8%에 달함
-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중에 요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전기 및 가스공급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1/5. 전기공급중단 19.2%, 가스공급 중단 20.4%인 것으로 나타남

## 2. 에너지지원 현황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법적 근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로와 에너지 생산 공기업 및 에너지 관련 단체에 의한 비제도적 지원의 경로로 구분됨

○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 체계는 에너지원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며, 비제도적 지원은 에너지원의 가격 할인 형태로 지원 실시

□ 법제도 수준에서의 에너지 관련 복지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지원이 이루어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를 실시. 생계급여 항목에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음. 07년 계측조사를 기준으로 한 2009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중 광열수도비는 최저생계비의 6.7%를 차지하여 미흡한 수준.

○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시적 지원.

□ 비제도적 지원 제도는 연탄, 전력 등 에너지 소비 자체에 대한 지원과 고효율 에너지 이용기기의 지급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원체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에너지원 지원 체계는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 약관이나 내규를 통하여 가격 할인 및 에너지 공급 중단에 유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에너지를 생산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기기에 대한 무상 설치하고 있으며, 에너지재단에서는 난방기기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들 지원도 기초보장수급자를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짐.

## 3.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필요

- 빈곤층(최저생계비100%미달)→차상위계층까지(최저생계비130%미달).
- 제도의 발전상황에 따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130%미달)→차차상위계층까지(최저생계비 150%미달<sup>19)</sup>)
  
- 현재 대부분의 복지지원과 에너지지원이 기초보장수급자로 집중되어 있고 비수급 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음. 에너지 바우처제도는 비수급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원 우선순위.
- 빈곤층(최저생계비 100% 미달) 중 비수급가구(부양의무자 기준 탈락자)부터 우선 적용.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100%-130%미달) 비수급자로 차후 단계적 확대.

---

19) 미국의 저소득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LIHEAP)의 경우, 각 주는 LIHEAP법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가정에 대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LIHEAP에서는 저소득층 가이드라인의 110%미만으로 설정하여서는 안되고, 최대 150% 혹은 주 소득 중앙치의 60%까지 설정할 수 있음.

##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 대한 토론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에서는 객관적인 논리와 감성적인 가치가 혼재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추진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독특한 특성이 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논의 역시 그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삶에서 에너지에 대한 주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오늘 토론회의 문제제기 상황들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논의와 관심이 지난 10여년동안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에너지 문제는 삶의 질에 대한 논의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 영역이 그만큼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회복지는 대부분 소비의 영역인데, 생산 영역에서 사회 및 경제 기반의 토대를 관리·지원하는 경제관련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쟁점을 의미있는 정책 주제로 설정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담론들을 확인하는 장을 열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이 현재 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바우처라는 정책 수단이 결합되면 논의는 복잡해 질 수 있으며 좀더 세밀한 후속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바우처라는 대상 및 수단이 양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 방식에서 개인별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전문관리주의 접근이 타당하고 한다. 바우처는 잔여적 복지 보다는 합리적인 소비 선택이 가능하다는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전달방식으로 많이 활용한다. 이러한 논리 및 현실 구조를 고려하면 잔여적 복지에서 바우처가 양립가능한지 아니면 양립가능한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미시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몇 가지 쟁점들을 토론을 위한 문제로 제기한다.

첫째, 생계급여에서 광열비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한 타당성이 좀더 엄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이 일상생

활하기에 적절할 정도의 수준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산정 기준에서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다양한 복지요소들을 고려하지만 예산 총액을 통제하는 단계에서 암묵적으로 조정률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하면 생계급여를 산정하는 모든 요소에서 재원 수준은 항상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수급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출부문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소를 통해 산정된 재원들을 암묵적으로 더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광열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타당성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이와 아울러 총액으로 산정 지원하는 현재의 생계급여 지원 방식을 광열비 뿐 아니라 다른 개별 항목들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지원대상이 설정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에너지 복지가 절실한 대상을 소득이나 자산기준으로 산정하기 보다는 욕구기준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경우 생계급여의 대상은 아니어도 에너지 복지 지원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안전망들을 활용하기 보다는 에너지 안전망의 대상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모든 요소들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 생계급여 지원 방식에 대한 대안 고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바우처 수단을 통해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의 부정사용 관리에 대한 대안들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바우처라는 시장 방식을 도입하면 공급자 방식의 쟁점 중 하나인 관리비용은 대폭 절감할 수 있지만 시장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현물 지급과 대응한 바우처 지급의 부정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전자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비용-효과성은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며 복지부에서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과 관리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관련 사업 예산규모가 적은 편이다. 이를 경우 비용-효과성이 확보되기 힘들다. 대안으로 시범 단계 기간 동안이라도 현재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업무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에너지 바우처의 논의를 좀더 진전시키면, 바우처 단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된다. 다양한 가격 쟁점들 중에서 복지의 공간적인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별로 에너지 지원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에너지 복지 수요는 지역별로 다양할 수 있다. 이를 생계급여 지원체계와 결합하면 다양성의 가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과잉공급과 과소공급의 쟁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다.

다섯째, 에너지 바우처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한 항목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보충급여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생계급여에서 에너지 부문만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현행 제도 특성상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기초적인 복지 보장 관점 보다는 보충급여의 부가서비스 성격으로 지원하고 현재의 생계급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정도에 맞추어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의 생점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원  
연구위원 박 세 경

-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주거권(housing rights)은 매우 중요하다.
  - 그러나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적절한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은 안정적 주택점유를 위한 토지문제와 주택문제, 이들을 아우르는 부동산 활동에 집중되어 왔다.
  - 주거공간은 추위와 더위, 눈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거주자의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주택보급률을 제고하는 양적 팽창에 치중해 오면서 주거 안전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 주거의 안전성은 거주자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의 높은 지병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 주거환경 가운데 특히 실내 온열환경이 부적절할 경우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이 있는 가구원의 요양과 회복에 많은 지장을 준다. 특히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영유아의 경우 실내 온열환경은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 실내 온열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혹한 또는 혹서, 강수 등과 같은 기후적 외적 요인, 주택의 벽, 바닥, 천장 등의 구조 재료에 의한 전열, 투기성과 같은 주택 구조재료 요인, 실내의 배치, 개구문의 위치나 크기와 같은 주택 실내계획 요인, 그리고 냉난방설비와 가전기기 등의 설비계획 요인 등이 포함된다.

- 에너지 복지는 주거의 온열환경에 대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여 거주자의 건강과 안녕,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에너지 활용의 효율을 통한 지구환경 보호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발제문에 소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정책은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협의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에너지 복지정책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 정책목표 이외에도 실내 온열환경 전반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의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미국의 주택단열지원사업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과 같이 에너지 빈곤 퇴치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는 다각적 정책접근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실제로,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의 동 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빈곤선 150%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1 투자로 가구당 광열비 \$1.80 절감하고(이 가운데 \$0.71(39.4%)은 광열비 연체료 관리 비용 절감 및 부적절 난방에 따른 질병 사고 감소의 효과로 나타남), 석유소비량 연간 24.1백만 배럴의 절약 및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구당 53톤을 감축하는 등 지역사회의 간접편익이 \$2.51 발생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ARRA)가 통과되면서 주택단열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최고 20배 이상 확충될 계획임(\$50억). 이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도 연방 빈곤선 150% 수준에서 200%까지 확대되고 지원규모도 현재 가구당 \$2,500 지원에서 최고 \$6,500까지 증가할 예정임.
-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구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가구로 조작적으로 정의할 때, 서울시 전체 가구의 10.3%가 이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8년도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비율은 평균 14.2%였으며, 전체 1분위 계층의 69.3%, 2분위 계층의 27.5%가 에너지 빈곤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전국적으로
  - 따라서 에너지 복지 향상의 차원에서 이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바우처 제도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금일 토론회의 주제에 비추어,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목적적합성, 수단적합성, 운영적합성과 관련된 다음의 질문 및 논의로 토론을 가늠하고자 한다.
- [목적적합성]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 에너지 바우처가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경감, 에너지 복지 향상이라는 제도도입 목적이 갖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제도설계의 목적과 실행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 제도가 운용될 수 있고, 바우처를 이용한 이용자의 구매력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정책접근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발제문에서는 생계급여의 문제점 보완과 에너지 가격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바우처 방식으로 기대하는 일반적 정책목표와 그 성격이 다소 상이하다.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현물지급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 정립을 통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통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에 따라 고효율의 에너지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소비형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 공급자간의 유효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가격 인하 및 질적 향상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에너지 바우처는 전력, 난방, 취사 등의 이용 형태에 대한 이용자 선택이 가능할 뿐, 사실상 공급자 선택이 제한된 공공재의 제공여건이 경쟁형태로 변환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급자 간 품질가격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과 가격경쟁을 통한 서비스 가격 하락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다. 참고로 바우처 제도를 다양한 분야에 도입 적용한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실 바우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경쟁적 시장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 [수단적합성] 에너지 지원의 수단으로서 바우처의 적합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사항과 운영적 사항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바우처 투입예산 대비 성과가 어느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지원대상의 이익을 형평성 있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생계급여의 광열비 지원 과정에서 지적된 전용의 문제와는 달리, 바우처 카드 또는 마이너스 통장의 형태로 제공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적절 사용(improper use)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 제공주체들, 그리고 바우처 지원대상자들을 포함한 관련 행위자들의 순응성 내지 제도반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실제로 보육바우처(아이사랑카드)의 도입과정에서 기존 지원방식의 전환에 따른 행정부담, 카드수수료 문제, 결제방식의 혼란 등으로 보육시설은 물론 일선 행정담당 공무원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컸다.
- [운영적합성-대상자 선정] 현행 에너지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되고 있다. 물론 발제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할 경우,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이는 엄청난 재정적, 정책적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예산확보의 속도에 따라 지원범위를 조정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지원의 표적화(targeting)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와 노인빈곤의 문제, 그리고 노인의 온열환경에 따른 신체적응 능력의 제약과 이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영유아의 경우에도 노인과 마찬가지로 외부 온열환경에 따른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 미국의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프로그램(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도 이러한 표적화 전략을 제도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 미국 LIHEAP의 지원 표적집단에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원 또는 5세 미만의 영유아가 1명이라도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핵심 성과관리 목표로 관리하고 있음.
  - LIHEAP의 표적화 지수(targeting index)는 노인표적화 지수와 영유아 표적화 지수, 2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실제 표적집단 수급가구 대비 지원가능 가구의 비율로 산정하며, 2010년 표적화 목표를 노인가구의 경우 96, 영유아가구의 경우 122로 고시하였음.
- [운영적합성-바우처의 운용] 이용자가 일정기간 일정액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해 바우처가 생성되는 재원구성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에서와 같이 바우처의 구성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공동으로 구성할 경우(본인부담금 선납의 경우에만 정부지원금과 함께 바우처가 생성되는 구조) 에너지 지원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인부담금의 수준은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또한 일정액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사용기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일정기간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가 유효기간 이후 소멸되는 유형(월별 일괄소멸 또는 분기단위, 반기단위)과,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의 이월형이 있을 수 있다. 단, 이월형의 경우에도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일정량(cap) 방식을 적용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혹한기와 혹서기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소멸형과 이월형에 대한 균형 있는 조합이 필요할 것이다.
- 이용자의 신청에서부터 지원자격 관리, 결제승인 처리, 결제수단의 관리, 지불정산업무 등의 핵심기능에 대한 역할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예시로 제시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금융방식(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경우 복수 금융기관 활용)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 문화바우처 등과 같이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사업 운영기관이 핵심 업무를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결제매체를 금융카드, 비금융카드, 종이바우처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결제수단은 전용단말기 또는 인터넷결제, 수결제, ARS 결제 등의 선택 등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제 측면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 인프라 구축비용이 바우처 운영모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 총 사업예산 및 규모(지원규모), 이용자의 소비유형과 특성, 공급기관의 선정과 역할 및 책임 등 사업시행 환경에 따라 투입되어야 할 사전비용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
- 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출발이며, 이러한 에너지의 공급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실상이 이해되고, 에너지 바우처가 추구하는 에너지 복지의 지향에 대한 합의와 실천방안이 마련되어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바람을 전달되기를 기대해 본다.

##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현 주

박광수 박사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한 발표는 빈곤층에 대한 기존의 에너지지원 제도의 문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 문제들을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에너지 지원에서 개별화가 취약하다는 점,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동절기 지원의 부족은 심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원하는 집단이 수급자 등 일부 빈곤층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설명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붙여보고자 합니다.

문제 분석과 관련하여 주거형태나 주거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저생계비에서는 가구규모가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거면적의 설정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하여도 기존의 지원에서 면적이 완전히 배제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가구규모와 지원의 탄력성 정도를 수치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주거형태별로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 소비

차이가 있는지, 이 밖에도 지역차이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자료를 통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에너지 소비의 차이를 가져온다하여도 이를 정책적으로 에너지 지원 수준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사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형태를 어떻게 지원에 반영하여 지원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석유, 가스, 연탄을 비롯한 에너지 형태와 관련하여 이 중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원이 전 에너지에 동일한 액수를 유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차이를 두게 될 경우 그 근거가 필요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형태로의 유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급자 중 단전가구의 증가를 도덕적 해이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생계비의 다른 부분(예를 들어 주거비 등)이 부족하여 광열비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이라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개별복지시스템 도입을 언급하였지만 생계비의 각 품목을 모두 개별화할 수 없으며 과연 광열 등의 에너지 지원이 개별화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에너지 지원은 동절기의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런 경우 개별화 방식이 주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일상적인 시기의 경우 에너지 소비 비용의 부족분은 생계비 조정으로 해결이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바우처방식의 도입을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바우처의 도입으로 에너지 소비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기나 가스에서 공급자 선택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에너지 형태 중 전기, 가스 그리고 연탄 사이의 선택도 대부분 지역이나 주거형태-세입자의 경우 주어진 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빈곤층의 선택 폭이 얼마나 넓은지 의문입니다. 바우처를 도입하여 이점이 적은 경우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관리비용만 증가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바우처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가 보다 명백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의 개선에서는 다시 수급자 우선 적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에게 집중된 여러 제도들이 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 사이의 간극을 더 넓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안은 재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수급계층보다 비수급빈곤층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여러 분석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등 새로운 수단의 고려도 과연 이러한 방식이 전매 가능성을 낮추는지(만약 카드로 석유를 다 구매한 후 가스비를 채납하면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나?)에 대하여 재고려, 이러한 도구들의 득과 실을 보다 면밀하게 비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에너지 복지법 및 에너지 복지 정책 추진 체계 연구 용역 결과 : 에너지복지법 초안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에너지복지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사회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 □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의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2. 주택(에너지 효율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호

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또는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조 (에너지복지급여의 결정)

-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급권자의 거주 지역·가구유형·점유형태·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복지급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앙에너지복지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에너지복지급여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복지급여 결정에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와 계측 조사 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조 (보장기관)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그 밖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 (에너지복지급여심사위원회)

- ① 이 법에 따른 에너지복지급여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에너지복지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에너지복지급여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에너지복지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에 두는 에너지복지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에너지복지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복지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급여 기준 및 지급방식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중앙에너지복지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 에너지복지 또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에너지복지급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에너지복지급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에너지 복지 또는 공공부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에너지복지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에너지복지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조 (에너지복지급여의 내용)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에너지복지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에너지비의 지급
2. 에너지 설비개선비의 지급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의 지급

#### □ 제8조 (필수에너지비)

- ①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필수에너지비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에너지비는 에너지 설비 개선비 지급 여부를 감안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에너지비의 금액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수급자의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필수에너지비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제9조 (에너지 설비개선비)

- ①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설비개선비는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설비개선비는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 점검 또는 고효율 에너지 설비 지원 및 주택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설비 개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점검은 3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설비개선비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

아 실시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지원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제10조 (긴급에너지복지급여)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복지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 상황, 급여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1조 (급여의 신청)

- ① 제3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 제12조 (신청에 의한 조사)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가구규모·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권자의 주택유형·점유형태·주택상태 등 주거실태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 설비시설 유무,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비용부담수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주거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의 고용주 그 밖에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보장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
-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3조 (확인조사)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그 밖에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4조 (조사결과와 보고 등)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를 조사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제15조 (급여의 결정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 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6조 (급여의 실시)

- 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결정·공표 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다.

#### □ 제17조 (급여의 변경 등)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주거실태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변경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8조 (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제19조 (청문)

보장기관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제20조 (압류 및 양도의 금지)

①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 제21조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제22조(에너지복지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에너지복지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2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에너지복지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 □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 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에너지 복지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 □ 제25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준용)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26조 (벌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7조 (벌칙)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